

2. 손 익 계 산 서

[일반] 제4기: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

[특별] 제2기: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

(사)한국기업지배구조원

(단위: 원)

과 목		일반회계	특별회계	합 계
항 목	목	금 액	금 액	
I. 수 입		2,046,712,319	298,908,283	2,345,620,602
	1. 회 비 수 입	1,958,566,000	-	1,958,566,000
	2. 수 익 사 업	67,515,515	-	67,515,515
	3. 용 역 수 입	-	90,000,000	90,000,000
	4. 자문수수료	-	120,112,992	120,112,992
	5. DATA제공	-	-	
	6. 이 자 수 입 ^(주1)	-	74,630,762	74,630,762
	7. 대여금이자수입 ^(주2)	-	14,164,526	14,164,526
	8. 기부금수입	19,440,000	-	19,440,000
	9. 잡 수 입	1,190,804	3	1,190,807
II. 사업외수익		210,038,118	-	210,038,118
	1.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	210,038,118	-	210,038,118
수 입 총 계		2,256,750,437	298,908,283	2,555,658,720
I. 인 건 비		1,689,774,197	10,790,192	1,700,564,389
	1. 급 여	1,689,774,197	10,790,192	1,700,564,389
II. 사업비 및 일반관리비		1,514,354,937	10,076,191	1,524,431,128
	1. 급 식 비	11,507,040	-	11,507,040
	2. 복리후생비	469,835,559	-	469,835,559
	3. 여비교통비	59,750,431	2,108,331	61,858,762
	4. 통 신 비	21,120,160	4,500	21,124,660
	5. 임차관리비	378,901,032	-	378,901,032
	6. 지급수수료	228,323,645	99,500	228,423,145
	7. 도서신문비	9,491,559	265,950	9,757,509
	8. 소 모 품 비	10,204,520	75,100	10,279,620
	9. 세금과공과	425,000	100,000	525,000
	10. 수선유지비	348,800	-	348,800
	11. 보 험 료	143,370	290,610	433,980
	12. 교육훈련비	5,648,500	-	5,648,500
	13. 행 사 비	66,199,626	-	66,199,626
	14. 회 의 비	8,993,930	4,721,000	13,714,930
	15. 인 쇄 비	32,623,100	2,411,200	35,034,300
	16. 업무추진비	67,282,459	-	67,282,459
	17. 흥 보 비	24,980,830	-	24,980,830
	18. 차 량 비	19,595,880	-	19,595,880
	19. 협 회 비	2,873,288	-	2,873,288
	20. 조사연구비	10,511,500	-	10,511,500
	21. 감가상각비	40,005,164	-	40,005,164
	22. 무형자산상각비	45,589,544	-	45,589,544
III. 연구사업비		-	25,000,000	25,000,000
	1. 연구용역비	-	25,000,000	25,000,000
IV. 사업외비용		139,346	145,110,767	145,250,113
	1.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^(주3)	-	144,736,331	144,736,331
	2. 잡 손 실	139,346	374,436	513,782
비 용 총 계		3,204,268,480	190,977,150	3,395,245,630
V.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		△947,518,043	107,931,133	△839,586,910
VI. 법 인 세 등		-	11,872,425	11,872,425
VII. 당 기 순 이 익		△947,518,043	96,058,708	△851,459,335

(주1)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(법인세법 제3조2항2호)

(주2) 주택자금 대여금이자수입 :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상당액 계상(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연 6.9% 적용)

(주3)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한도액 = (이자소득금액×100%)+(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×50%)